

불용품 처리 규정

□ 제정 : 1998. 05. 21

□ 개정 : 2017. 0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의 불용품에 대한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무를 정확히 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가치가 없거나 유효물품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2. 철거된 재료로서 불량품
3. 기타 폐품 및 잡품으로서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물품
4. 시효가 지난 보관서류,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는 교내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절차) ① 불용품의 처분은 총무처 후생관재과에서 주관한다.

② 해당부서가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서식1)에 따라 총무처에 처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물품을 관리 사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처분완료 후 즉시 총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결정) ① 불용품 처분 예정가격이 500,000원을 초과 할 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② 불용품 처분 예정가격이 500,000원 미만일 때에는 총무처장이 전결한다.

제6조(처분) 제4조에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총무처에서 폐기 또는 매각처리하고 처분대금은 학교 잡수입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계정에 입금시킬 수있다.

제7조(대장정리) 불용품으로 처리된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내용을 등재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